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83
----------	-------

발의연월일 : 2026. 3. 18.

발 의 자 : 박지혜 · 서영교 · 진성준
안도걸 · 최민희 · 권향엽
김남근 · 박지원 · 윤준병
김원이 · 송재봉 · 임미애
위성곤 · 박선원 · 이훈기
이광희 · 김 윤 의원
(17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흐름에 발맞추어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조기에 구축하여 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목적에 맞추어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자금, 기술개발, 청정생산 구축 등 정책 공급자로서의 정부 역할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참여를 유인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점증하는 기후환경위기 속에 놓여있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신기술 및 비즈니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지향형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구조로의 전환(그린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의무·규제를 넘어 민·관의 협력하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전환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실질적인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민·관 협력의 기초하에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실효성있는 그린전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지원,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책을 중심으로 현행 법을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으로 함(안 제명).

나. 기업의 자발적 선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의 그린전환을 촉진하고 저탄소·친환경 산업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산업그린전환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산업그린전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산업그린전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산업그린전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사업자단체가 산업그린전환을 위한 중장기 업종별 로드맵을 작성

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원시책의 수립을 제안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기업이 효율적으로 산업그린전환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그린전환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사. 그린전환사업장 구축, 그린전환 관련 기술개발 및 설비자금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산업그린전환을 위해 기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자. 기업이 스스로 산업그린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자발적으로 선언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발적 선언 기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차.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정보 관리, 표준·통계, 국제협력, 국제 환경규제 대응, 교육·홍보 등 산업그린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카.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 기술개발 및 신시장 확대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타. 산업통상부장관은 정의로운 산업그린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제조, 금속자원 재자원화, 생태산업개발, 자원 효율등급제, 재생원료인증제 등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지원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53조부터 제63조까지).

하. 산업그린전환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산업그린 전환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산업그린전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64조 및 제65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자발적 선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의 그린전환을 촉진하고 저탄소·친환경 산업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그린전환”이란 기업의 제품 생산, 수송, 소비 전반에 걸친 산업활동에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호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순환경제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산업을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2. “그린전환기술”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 중 산업그린전환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3. “그린전환생산기술”이란 그린전환기술 중 제품의 설계·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 또는 그린전환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4. “그린전환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린전환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재제조 제품, 재생원료, 그린전환생산설비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을 말한다.
5. “그린전환생산설비”란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하여 그린전환생산기술이 적용된 기기(器機), 설비 및 장치를 말한다.
6. “그린전환사업장”이란 제조공정에서 그린전환생산설비를 활용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재생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재활용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쳐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을 말한다.
8. “재제조(再製造)”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

호에 따른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 “제품서비스화”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품을 소유하도록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품의 기능 및 성과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산업그린전환경영체제”란 기업등이 산업그린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경영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를 말한다.

11.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말한다.

12. “정의로운 전환”이란 산업그린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담과 영향이 특정 지역, 산업,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질서 있게 산업그린전환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순환경제”란 원료조달, 설계, 생산, 유통, 사용, 재자원화 등 제품의 전과정 단계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를 말한다.

14. “생태산업개발”이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순환이용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으로 기업 또는 지역사회 간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15. “금속자원 재자원화”란 재생자원에서부터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물질에서 금속자원을 회수하여 산업의 원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16. “자원효율관리품목”이란 「산업발전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원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의 이용 효율 관리 및 향상이 필요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재·부품·제품을 말한다.

17. “그린전환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거나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거나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5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18. “재생원료”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재생원료

나. 사용후 제품 및 제조 공정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추출된
유가금속 또는 그 화합물

다.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생원료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효율적·효과적인
산업그린전환을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인 추진시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추진시책에 따라 관할 지
역의 산업적 현황을 고려하여 산업그린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고 산업그린전
환 관련 기술을 개발·활용하는 등 산업그린전환을 위하여 적극적
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그린전환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업그린전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산업그린전환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

전환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그린전환 촉진사업, 기반조성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산업그린전환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에 따른 산업그린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그린전환의 효과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2. 산업그린전환 촉진을 위한 목표설정
3. 산업그린전환의 국내·외 동향
4. 생산공정 개선과 그린전환생산기술 개발 등 산업그린전환 구축방안
5. 산업그린전환 촉진을 위한 그린전환생산설비산업, 재제조산업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 방안
6.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동향 분석 및 지원 시책
7.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산업그린전환 방안
8. 산업그린전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산업부문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 방안
10. 산·학·연 협력을 통한 산업그린전환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1. 산업그린전환의 자율적 실행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

12. 이 법에 따른 계획 및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산업그린전환 촉진과 관련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산업그린전환 촉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업종별 또는 품목별 에너지소비수준, 민간의 자발적 로드맵 이행계획, 자원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그린전환 시행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그린전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산업그린전환위원회에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산업그린전환을 위한 비용 예측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산업그린전환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예측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산업그린전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산업그린전환을 위한 설비 구축 및 운용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비용

2. 산업그린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개편 및 사회적 전환 비용

3.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산업그린전환에 수반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계의 전문가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정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바탕으로 산업그린전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주기, 방법, 평가 기준 및 관리 방안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업그린전환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산업그린전환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산업그린전환위원회) ① 산업그린전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산업그린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2.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3. 산업그린전환에 관한 국가비전 수립
4. 산업그린전환을 위한 사업 실시에 따른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대책
5. 산업그린전환 관련 제도 신설·변경
6. 산업그린전환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업무 조정
7. 산업그린전환 관련 입찰 및 실행 협약 모델 검토 및 승인
8. 산업그린전환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간의 조율

9. 제11조에 따른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로드맵 제안에 대한 승인
10. 산업그린전환 정책관련 공급망의 범위 설정
11. 그 밖에 산업그린전환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산업그린전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산업그린전환에 대한 지원

제1절 업종별 로드맵 수립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제10조(민간의 업종별 로드맵 제안)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품목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해당 업종·품목의 특성과 전망을 고려하여 산업그린전환을 위한 중장기 업종별 로드맵(이하 “업종별 로드맵”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그린전환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업종별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 규모, 에너지 소비 특성, 전환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그린전환이 필요한 주요 분야 및 업종 분류체계(이하 “전환분류체계”라 한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환분류체계를 정하는데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사업자단체는 전환분류체계의 신설·변경·폐지가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를 건의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업종별 로드맵 작성 및 제안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업종별 로드맵 제안 절차, 제출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업종별 로드맵에 대한 승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제안한 업종별 로드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산업그린전환 목표의 타당성
2. 산업그린전환 전략의 구체성 및 실효성
3. 투자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
4.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체계
5. 산업그린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업종별 로드맵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그린전환 실천과제 제안) ① 사업자단체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그린전환 실천과제(이하 “실천과제”라 한다)를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실천과제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조달 단계에서의 탄소배출 저감 또는 재생자원 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2. 제품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의 저탄소·친환경 기술 적용 및 녹색제품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3. 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효율 향상, 환경오염 저감에 관한 사항
4. 수송·물류 단계에서의 친환경 연료 활용, 저탄소 운송체계 확립 등 녹색물류 추진에 관한 사항
5. 소비·폐기 단계에서의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환경부담 저감에 관한 사항
6. 업종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산업그린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산업그린전환 실천과제를 발굴한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이를 추진하는 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산업그린전환 금융지원

- 제13조(산업그린전환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이 효율적으로 산업그린전환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그린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조합의 결성이나 회사의 설립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2.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자가 산업그린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단독 또는 연계하여 보증·신용공여·융자대출 등의 자금우대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관에 준하는 기관·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기금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업종별 로드맵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천과제에 따라 산업그린전환을 이행하는 기업(이하 “이행기업”이라 한다)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자절차 및 방법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공금융기관 등의 자금공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금융기관은 이행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공급을 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그 밖에 자금 공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및 기관은 이행기업에 우선적으로 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그 밖에 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5조(금융기관의 금융지원사업 등) ① 금융기관은 이행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은 제24조에 따른 이행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

5조에 따른 이행점검 결과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성과와 연동하여 최대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금리 인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연금기금의 우선적 투자) ① 다음 각 호의 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은 이행기업에 대한 우선적 투자를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3. 「군인연금법」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4. 「공무원연금법」 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금

② 제1항 각 호의 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은 산업그린전환과 관련된 해당 기금의 운영성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산업그린전환 기업 지원

제17조(그린전환사업장 구축 및 확산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 변화유발물질 등 환경오염물질을 혁신적으로 줄이기 위한 그린전환

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생산공정 개선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폐에너지 등의 재이용
3. 친환경 제품의 생산
4. 친환경 연료 및 원료로의 대체
5. 작업조건의 개선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그린전환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사업장의 산업그린전환 수준에 관한 진단
2. 제조사업장의 산업그린전환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대한 지원
4. 그린전환생산설비 및 그린전환생산기술에 관한 지원
5. 그린전환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그 밖에 그린전환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산업그린전환 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등의 산업그린전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 간 산업그린전환 경영 파트너십의 확산

2. 국외 진출 국내기업의 산업그린전환 경영 지원사업

3. 그 밖에 산업그린전환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자단체는 그린전환생산설비 및 그린전환제품의 생산·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작성·유지하고, 기업등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산업그린전환 경영에 관한 진단·지도)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산업그린전환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그린전환 경영에 관한 진단·지도를 할 수 있다.

제20조(그린전환생산기술의 이전·확산) 산업통상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린전환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하여 그린전환생산기술의 활용에 관한 생산공정 진단·지도사업과 그린전환생산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기술개발 및 설비자금 등 지원) ① 정부는 기업이 산업그린전환 실천과제 및 업종별로드맵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출연·보조 또

는 용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그린전환에 필요한 생산공정 개선
2. 산업그린전환을 위한 설비 개조, 신설 또는 증설
3. 그린전환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

② 제1항에 따른 출연·보조·용자 등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행기업
2. 그린전환사업장을 갖춘 기업
3. 산업그린전환경영체제를 도입한 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업에 대하여 산업그린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지원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제4절 경쟁입찰을 통한 지원 등

제23조(경쟁입찰 방식의 지원대상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시책을 고려하여 산업그린전환의 목표와 총지원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2.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4. 그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시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탄소감축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산업그린전환 목표 및 지원금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자율적으로 산업그린전환 목표를 설정하고, 제2항에 따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기업 중 산업그린전환 목표의 도전성 및 실현가능성, 지원금액 대비 감축 효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입찰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경쟁입찰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이행협약의 체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과 산업그린전환 목표 이행을 위한 이행협약(이하 “이행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행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협약에서 정하는 목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행협약의 체결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이행협약의 이행점검 및 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체결된 이행협약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행협약의 점검 및 평가를 제64조에 따른 국가산업그린전환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행점검의 주기, 점검 및 평가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이행점검에 따른 사후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목표달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목표달성을 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회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회수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으로 귀속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회수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회수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회수금 부과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기업의 자발적 산업그린전환 선언 및 검증 등

제27조(기업의 자발적 산업그린전환 선언) ① 기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달성하여야 하는 목표나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수준을 초과하여, 기업 스스로 산업그린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자발적으로 선언(이하 “자발적 선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발적 선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정 의무 또는 목표를 상회하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또는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
2. 친환경 생산 공정 도입, 저탄소 기술 투자 및 개발 계획 등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이행 계획
3. 선언 목표가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또는 목표 수준을 상회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4. 그 밖에 산업그린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발적 선언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발적 선언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이 자발적 선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자발적 선언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는 자발적 선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발적 선언의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제64조에 따른 국가산업그린전환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자발적 선언의 절차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자발적 선언 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발적 선언을 한 기업에 대하여 그 이행 실적 등을 평가하여 자금, 기술, 인력, 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자발적 선언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축) ① 자발적 선언을 한 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약한 목표 및 이행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 선언을 한 기업은 3년마다 이행 실적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자발적 선언 검증기관(이하 “자발적 선언 검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자발적 선언을 한 기업은 제2항에 따라 검증받은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발적 선언을 한 기업은

달성하지 못한 목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발행기관에서 발급된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자발적 선언의 신뢰성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검증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제28조에 따른 지원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자발적 선언 검증기관 등록 등) ① 제29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 선언 이행 실적을 검증하려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인 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사업의 승계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발적 선언 검증기관이 그 검증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경우로서 합병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 자발적 선언 검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검증사업을 양수한 기관이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선언 검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 또는 법인이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선언 검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자발적 선언 검증기관의 의무 등) ① 자발적 선언 검증기관은 검증기관의 독립성 유지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보고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검증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 선언 검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자발적 선언 검증기관은 검증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검증범위 및 검증결과

2. 자발적 선언 검증기관의 의견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자발적 선언 검증기관은 검증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검증절차 및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검증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검증조서를 검증종료시점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자발적 선언 검증기관은 검증조서를 위조·변조 및 제2항의 기간 동안 훼손 또는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자발적 선언 검증기관에 대한 제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발적 선언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증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검증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3. 검증업무 정지기간 중에 검증을 한 경우

4. 제3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0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업의 자발적 선언의 이행 및 목표를 검증한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제32조를 위반한 자발적 선언 검증기관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산업그린전환 기반조성사업

제34조(산업그린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산업그린전환 전문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산업그린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3. 미래 유망 산업그린전환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4. 산업그린전환 전문인력의 재교육
 5. 공급망 체계에서 중소·중견기업 산업그린전환 전문인력의 공급
원활화
 6. 산업그린전환 전문인력의 활용지원
 7. 산업별 산업그린전환 전문인력 육성 협의체의 운영 지원
 8. 산업그린전환 전문인력 활용실태 조사·분석
 9. 그 밖에 산업그린전환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및 산업체로의 공
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시책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체를 산업그린전환아카데미(이하 “그린전환아카데미”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린전환아카데미로 지정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그린전환아카데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그 밖에 그린전환아카데미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산업그린전환 정보 생산·관리 및 활용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그린전환 기술 정보·특허정보·표준정보 및 국내외 산업그린전환 동향 등 산업그린전환에 관한 정보
2. 산업그린전환 전문인력의 산업별·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 및 국내외 우수 산업그린전환 전문인력 등에 관한 정보
3. 그린전환생산설비 등에 관한 정보
4. 산업그린전환 경영에 관한 정보
5. 산업그린전환의 기반이 되는 국내외 산업·무역 등에 관한 정보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7. 그린전환생산설비와 그린전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

8.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산업그린전환에 필요한 공급망 상의 다른 기업이 보유한 정보

9. 그 밖에 산업그린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그린전환 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산업그린전환의 표준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 모델 개발·이전·확산과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하여 산업그린전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그린전환 표준의 개발·보급 및 확산
2. 산업그린전환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보급 및 확산
3. 산업그린전환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산업그린전환 표준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통계작성 및 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 촉진을 위해 산업그린전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수집·작성에 관하여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과 관련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그 밖에 투자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그린전환 관련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산업그린전환 저변의 확충)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수준을 높이고 산업그린전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그린전환 저변의 확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그린전환의 필요성 및 산업그린전환 우수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提高)
2. 산업그린전환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
3. 산업그린전환의 중요성 전파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그린전환문화공간 설치·운영
4. 그 밖에 산업그린전환 저변확충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9조(산업그린전환 국제협력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산업그린전환을 촉진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국제산업그린전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그린전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2. 산업그린전환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내·외 산업그린전환 기술·제도의 활용 또는 도입 촉진
4. 국제산업그린전환 기술·제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단 설립 및 지원
5. 국내 산업그린전환 전문연구소·전문기업의 해외진출 또는 해외 전문연구소·전문기업의 국내 유치
6. 산업그린전환 관련 국제전시회·국제세미나 개최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산업그린전환 분야 관련 사업
8. 그 밖에 국제산업그린전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국제산업그린전환 협력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국제산업그린전환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국제산업그린전환 협력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2. 국제산업그린전환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국제산업그린전환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자

제40조(국제 환경규제 대응시책의 추진) ① 정부는 산업그린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 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2.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홍보
4. 그 밖에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산업그린전환경영에 관한 교육·홍보 등) ① 정부는 산업그린전환경영에 관한 지식·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산업그린전환경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그린전환경영을 보급하기 위하여 산업그린전환경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장 산업그린전환 산업육성 및 신시장 확대

제1절 산업그린전환 산업 육성 등

제42조(산업그린전환 산업의 육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인 산업그린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그린전환생산설비 제조사업
2. 제조공정 효율화 및 탄소 저감 설비 제조사업
3. 그린전환기술 개발사업
4. 산업그린전환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분석·진단·상담·정보 제공·교육 등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산업그린전환 컨설팅 사업”이라 한다)
5. 산업그린전환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 산업의 체계적·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산업그린전환에 필요한 설비 및 제품 등을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그린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그린전환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산업그린전환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대학·전문대학·개방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제71조에 따른 국가산업그린전환진흥원
7.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8.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사업자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1. 창업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4조(산업그린전환 신시장 지원 대상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시장 창출이나 육성이 필요한 분야 또는 과제(이하 “신시장 지원 대상”이라 한다)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시장 지원 대상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산업 부문 탄소중립 달성에의 기여 가능성
2. 탈탄소에너지 기술의 혁신성 또는 상용화 가능성
3.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4. 국내·외 시장 창출 및 수출 확대 가능성
5. 기존 산업과의 연계 및 파급효과
6. 그 밖에 산업그린전환 신시장 창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시장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시장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산업그린전환 선도제품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 촉진을 위하여 혁신성 및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산업그린전환 관련 설비 및 제품(이하 “선도제품”이라 한다)의 개발·실증·상용화 및 보급 확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제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 장관이 선정한다.

1. 탄소 배출 감축 효과 등 산업그린전환에의 기여도
2. 제품의 기술적 혁신성 및 차별성
3.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
4. 산업 생태계 발전 및 관련 산업 파급 효과
5. 표준화 및 인증 확보 가능성
6. 그 밖에 산업그린전환에 기여하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

③ 산업통상부 장관은 선도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우선 지원
2.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3. 성능 평가, 인증 및 표준화 지원
4.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 지원
5. 국내외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선도제품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도제품의 선정 기준, 절차, 지원 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산업그린전환 촉진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제46조(신속처리 대상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하 “신속처리 대상 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포함된 핵심 사업
2. 제44조에 따라 선정된 신시장 지원 대상 관련 사업
3. 제45조에 따라 선정된 선도제품의 실증 또는 상용화를 위한 사업
4. 대규모 투자 또는 신기술 도입을 통하여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을 현저히 감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5. 그 밖에 산업그린전환의 가속화를 위하여 신속한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신속처리 대상 사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속처리 대상 사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속처리 대상 사업의 지정 기준,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신속처리 대상의 맞춤형 심사)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신속처리 대상 사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의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속처리 대상 사업의 효율적인 인허가등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전 상담 및 사전 검토의 적극적 실시
2. 여러 인허가등의 통합 또는 병행 심사
3. 서류 보완 요구 횟수의 최소화 및 보완 기간 단축
4. 관계 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 절차 신속화
5. 전담 심사 인력 또는 창구 지정·운영
6. 그 밖에 맞춤형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속처리 대상 사업에 대한 맞춤형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맞춤형 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신속처리 대상의 조건부 허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신속처리 대상 사업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의 일부를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허가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의 안전 및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제외한다.

1. 해당 요건을 추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

우

2. 해당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 및 보증 방안이 마련된 경우

3. 해당 인허가등의 성격상 조건부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인허가등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건부 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인허가등의 범위, 조건의 내용, 이행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정의로운 산업그린전환 촉진 및 지원

제49조(정의로운 산업그린전환을 위한 시책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특정 산업이나 기업 및 지역 등이 일방적인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산업그린

전환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산업·업종, 지역, 기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그린전환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2. 기업 진단을 통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 방안 컨설팅
3. 산업그린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및 승계 관련 지원
4. 산업그린전환에 따른 기업이 소재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5.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산업, 기업, 지역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우선 고려 대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그린전환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등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으로 분류되어 생산 공정 전환이 시급할 것

으로 예상되는 기업

2. 산업그린전환으로 인해 사업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거나, 생산 물량 감소 또는 사업장 폐쇄 등이 예상되는 기업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4. 그 밖에 산업그린전환으로 인해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업 및 관련 이해관계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선정 절차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정의로운 전환 지원 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등이 산업그린전환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업의 사업 모델 전환 및 사업 재편을 위한 전문 컨설팅 제공
2. 친환경 기술 및 설비 투자 등 산업그린전환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융자
3. 산업그린전환에 필요한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의 자문
4. 산업생태계 안에서 대기업 및 관련 기업과의 산업그린전환 협력 촉진
5. 사업장 이전 또는 폐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산업그린전환에 따라 침체될 수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

7. 산업그린전환 관련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이해 향상 및 참여 유도

8. 그밖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정의로운 전환 이행에 대한 평가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산업그린전환 관련 기업의 재정적 부담 및 경영 안정성 변화

2. 산업그린전환으로 인한 기업의 사업 재편 및 신규 사업 전환 현황

3. 산업그린전환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신규 투자 유치 성과

4.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의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전환 지원 정책을 수립·개선하여야 한다.

제7장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

제1절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등

제53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천연자원과 재생자원을 연계한 총괄적 수급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
2. 천연자원 및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3. 기업 간 천연자원·재생자원 및 에너지의 교환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및 경제성 평가
4. 생태산업개발의 활성화
5. 재제조 산업의 육성
6. 제품서비스화 산업의 육성
7. 금속자원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산업의 지원
8.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품 설계 및 공정 개선 지원
9.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4조(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금속자원 재자원화 관련 산업 육성
2. 금속자원 재자원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재자원화된 금속의 안정적인 수급

② 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제조 사업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56조(자원효율등급제 운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제품환경규제 대응과 자원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보급량이 많고 상당량의 자원을 소비하는 소재·부품·제품 중 자원의 이용 효율 관리가 필요한 자원효율관리품목을 지정하고,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이하 “제조·수입업자”라 한다)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원효율을 평가하여 표시하는 제도(이하 “자원효율등급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효율관리품목의 지정 등 그 밖에 자원효율등급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자원효율우수제품에 대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원효율이 우수한 자원효율관리품목

(이하 “자원효율우수제품”이라 한다)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자원효율우수제품의 생산·수입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조·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원효율우수제품의 생산설비 구축 및 확충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2. 자원효율우수제품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3. 자원효율우수제품의 생산·유통 관련 규제 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
4. 소비자의 자원효율우수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인센티브 제공
5. 그 밖에 자원효율우수제품의 생산·유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거나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2절 생태산업개발 촉진

제58조(생태산업개발의 촉진) 정부는 생태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2. 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3. 생태산업개발에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4.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원
5.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생산제품의 품질인증 획득 지원

6. 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9조(그린전환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단지에서 산업그린전환 및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그린전환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그린전환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산업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이 지역사회 및 입주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58조의 사업을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그린전환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

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그린전환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린전환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린전환산업단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그 밖에 그린전환산업단지의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정과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인증 등

제60조(그린전환생산설비, 재제조 제품 및 우수 재활용 제품의 품질인증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그린전환생산설비, 재제조 제품 및 우수 재활용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린전환생산설비, 재제조 제품 및 우수 재활용 제품에 대한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 또는 우수 재활용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그린전환생산설비, 재제조 제품 및 우수 재활용 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대상·기준·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 제품 또는 우수 재활용 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재생원료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원료의 생산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 또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부품·제품을 대상으로 공급망 전 과정에서의 재생원료 사용 여부와 함유율 등에 관하여 인증(이하 “재생원료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생원료인증을 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재생원료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생원료인증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재생원료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8호 나목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고시하는 재생원료인증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재생원료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원료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

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을 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4. 제9항에 따른 재생원료 인증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재생원료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원료인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재생원료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생원료인증 관련 정책 수립·이행 지원
2. 재생원료인증 관련 인증기준의 제정 및 관리
3. 재생원료인증을 위한 인증심사원 양성 및 교육
4. 이 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5. 그 밖에 재생원료인증 운영에 관한 업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이하 “재생원료 인증 운영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원료 인증기관 및 재생원료인증 운영기관의 재생원료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⑨ 재생원료 인증기관 및 재생원료인증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0조에 따른 그린전환 생산설비, 재제조 제품 및 우수 재활용 제품의 품질인증 또는 제61조에 따른 재생원료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0조제3항 또는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 또는 우수 재활용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 또는 우수 재활용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인증제품의 표시 등) ① 제6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 및 제61조에 따른 재생원료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품질인증 표시 및 재생원료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증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② 제6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 또는 제61조에 따른 재생원료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 또는 재생원료인증을 받은 사업자임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제조 제품 또는 우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구매자가 재제조 제품 또는 우수 재활용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④ 재제조 제품 또는 우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표시한 재제조 제품 또는 우수 재활용 제품에 대한 품질보

증기간과 수리·교환·환불 등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64조(국가산업그린전환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그린전환 기술의 보급, 기업의 산업그린전환 경영촉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그린전환 기술의 지원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가산업그린전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7조에 따른 그린전환사업장 구축 및 확산 사업
2. 제20조에 따른 그린전환생산기술의 이전·확산 사업
3. 제21조에 따른 기술개발 및 설비자금 등의 보조·융자 사업
4. 제35조에 따른 산업그린전환정보망 구축·운영 사업
5. 제40조에 따른 국제 환경규제 지원 사업
6. 제41조에 따른 산업그린전환경영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7. 제45조에 따른 선도제품 선정 및 확산 사업
8. 제51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지원 사업
9. 제53조에 따른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사업

10. 제54조에 따른 금속자원 재자원화 지원 사업
 11. 제55조에 따른 재제조 자금 지원 사업
 12. 제56조에 따른 자원효율등급제 운영 사업
 13. 제57조에 따른 자원효율우수제품 지원 사업
 14. 제58조에 따른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15. 제61조에 따른 재생원료인증 운영 사업
 16. 그린전환기술 개발 및 지원 사업
 17.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그린전환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
 18. 그린전환기술과 관련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19. 산업그린전환경영체제 구축 지원 사업
 20. 국제 환경규제 대응에 관한 사업
 21. 국내외 환경규제 이행과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의 해소 지원
 22. 그 밖에 산업그린전환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재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 부문의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입을 고려하여 기금 사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 산업그린전환 관련 시설투자 및 설비자금 지원
2. 산업그린전환을 위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3. 기업에 대한 경쟁입찰을 통한 보조금 지원
4. 자발적 선언 기업에 대한 지원
5. 산업그린전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6. 산업그린전환 기반조성 사업
7. 산업그린전환 신시장 육성 및 선도제품 지원
8. 정의로운 산업그린전환을 위한 지원 사업
9.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및 지원 사업
10. 산업 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산업그린전환 촉진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6조(산업그린전환 추진본부의 지정 및 활동)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녹색경영의 보급·확산 및 산업그린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산업그린전환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그린전환을 위한 실천운동의 전개
2. 업종별·품목별 산업그린전환 실천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발굴 및 건의
3. 환경규제의 동향 분석, 해당 기업에 대한 전파,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한 환경규제의 대응능력 제고
4. 산업그린전환을 위한 홍보·교육 등의 실시
5. 외국 관련 기관과의 산업그린전환 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관련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분석 및 관련 교육의 실시
7. 산업그린전환 경영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8. 기업에 대한 산업그린전환 지도·자문 및 교육·홍보의 실시
9. 그 밖에 산업그린전환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추진본부는 지역별·산업단지별로 해당 지역의 기업·학계·연구소·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를 포함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공동 추진과제의 발굴과 지원방안의 협의 등 산업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7조(허위 산업그린전환 조사 및 공표) ① 정부는 산업그린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그린전환 경영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표시한 경우
2.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실과 다르게 산업그린전환 경영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3. 기업의 홍보나 판매하는 제품 등에 산업그린전환 경영으로 위장하는 경우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그린전환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공시하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게 산업그린전환 경영 관련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자료 제출의 요구방법·절차 및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의 촉진 및 순환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자, 진흥원, 추진본부 등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

여 그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9조(수수료)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70조 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1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등록 취소
2. 제34조제4항에 따른 그린전환아카데미의 지정 취소
3. 제59조제4항에 따른 그린전환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4. 제60조제5항에 따른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 취소
5. 제61조제4항에 따른 재생원료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6. 제61조제7항에 따른 재생원료인증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7. 제62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72조(비밀유지)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그린전환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장 벌칙

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등록·지정 등을 받은 자
 - 가.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등록
 - 나. 제60조제4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
 - 다. 제61조제2항에 따른 재생원료 인증기관 지정

라. 제61조제6항에 따른 재생원료인증 운영기관 지정

2. 제72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증 업무를 한 자

2. 제60조제4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평가 업무를 한 자

3. 제61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업무를 한 자

4. 제61조제6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운영 업무를 한 자

5.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받았음을 홍보한 자

6. 제6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64조에 따른 국가산업그린전환진흥원
2. 산업통상부장관이 제7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7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6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61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6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제조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증기간 등 보상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6. 제6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그린전환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수립한 산업그린전환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산업환경정보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축된 산업환경정보망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그린전환 정보망으로 본다.

제4조(생태산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그린전환산업단지로 본다.

제5조(재제조에 관한 품질표시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 본다.

제6조(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

원회를 진흥원의 최초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보며, 최초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진흥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1. 진흥원의 정관

2. 부칙 제7조에 따라 진흥원이 승계하게 되는 권리·의무, 재산 및 직원의 승계 등에 관한 계획(이하 “승계계획”이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제2호의 사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등을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진흥원은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승계계획에 포함된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관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 설립등

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진흥원 설립 당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으로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 중 승계계획에 포함된 직원은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진흥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 관하여는 진흥원의 설립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진흥원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녹색경영 추진본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축된 녹색경영 추진본부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그린전환 추진본부로 본다.

제9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②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9)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생태산업단지”를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 제59조에 따른 그린전환산업단지”로 한다.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환경경영”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